



보도자료

담당자 조영현 연구위원(02-3775-9032)

보도 2026. 6. 26.(금) 조간부터
(온라인 2026. 6. 25.(목) 12: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02-3775-9115)

매수 총 3매

보험연구원,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CEO Report 발간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주요국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유연성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으로, 안정적 가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은 물론 중개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외부에 보관해 기준 통화와 1:1 가치 고정을 유지함으로써,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수단이자 회계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또한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분산원장 위에서 전자적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나아가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한 구조를 활용하면 보험상품을 대출·결제·투자 등 다른 금융 기능과 결합해 하나의 모듈화된 상품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

- (해외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의 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례가 개념증명(PoC) 또는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 (결제·정산) Aon의 멀티체인·멀티에셋 보험료 결제 개념증명(PoC)과 Evertas·Nayms의 Lloyd's 시장 내 USDC 보험료 수납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이 보험 가치사슬의 자금 이동 과정에서 정산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줌
 - (언더라이팅·보험금 심사 자동화) Etherisc의 항공지연·농작물·디페킹 지수형 보험, Arbol의 기후 지수형 재보험은 오라클 기반 자동 조건 판단과 스테이블코인 즉시 정산을 결합한 사례로, 보험금 청구·심사·지급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자본 조달·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 Nexus Mutual은 스테이블코인을 보험료·보험금 결제수단, 자본 조달 경로, 운용 자산, 보장 대상 리스크 자체로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상호조합의 보험 원리를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내 현황) 실거래 수준의 인프라 검증을 진행 중인 은행업권이나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검증 중인 카드업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머물러 있음
 - 은행업권은 실거래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정산 인프라 전반을 검증하고 있고, 카드업권은 기존 가맹점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구조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보험업권에서는 교보생명 이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전 검증을 병행하고 있음
- (정책 과제) 감독·정책적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의 재검토, 지급여력제도(K-ICS)의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보험업법은 보험료·보험금 결제 통화를 명시적으로 원화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은행법상 원화 법정통화 원칙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법정통화도 외국환도 아니라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

지 않음

-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을 보험회사의 운용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여력제도(K-ICS)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 측정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른 보험금 자동 지급이 보험업법상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경영 대응) 보험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탐색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따른 결제수단의 다변화에 대비하여야 함
 -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기술·운영·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첨부: CEO Report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